

부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나43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대수,김홍일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6. 19

판결선 고 2020. 7. 10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단30205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9.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2015. 5. 29.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7. 1. 접수 제45645호, 45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C를 상대로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46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E 사이의 셋째아들이고, 피고는 그들의 첫째아들이다.

나. 피고는 1977. 5. 31. 별지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대 114.4㎡ 와 N 대 12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동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E 및 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2015. 7.23.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E 및 피고가 2015. 5. 29.경 E이 O동부동산의 1/2지분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M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1심 증인 1의 증언 및 갑 제6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판사 이재덕판사 홍준서

별지